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2.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1
1. 총규모	1
2. 세입예산안	2
3. 세출예산안	3
4. 명시이월 사업조서	4
III. 검토의견	5
1. 세입예산안	5
2. 세출예산안	6
3. 명시이월사업	7

I. 제안경위

- 안 건 명 :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제 출 자 : 경기도교육감
- 제 출 일 : 2017년 10월 27일 / 11월 22일(수정예산안)
- 회 부 일 : 2017년 11월 30일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 2017.11.27.~11.30)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세입·세출 45억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II.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1. 총규모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중앙 정부이전 수입이 312억원 증액된 14조 3,886억원이었으나, 45억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최종예산안 규모는 총 357억원이 증액된 14조 3,9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하였음.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단위: 억원)

구 분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안		추경 증감	
		당초	수정(B)	금액(B-A)	비율
총 규 모	143,574	143,886	143,931	357	0.2%

2. 세입예산안

-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49억원, 자체 수입 19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1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총 357억원 0.2%가 증액된 것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17년 기정예산		'17년 제3회 추경안			증감액	
	(A)	구성비	당초	수정(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143,574	100%	143,886	143,931	100%	357	0.2%
이 전 수 입	134,582	93.7%	134,874	134,919	93.7%	337	0.3%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105,563	73.5%	105,866	105,911	73.5%	349	0.3%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28,936	20.2%	28,925	28,925	20.2%	△11	△0.0%
기 타 이 전 수 입	83	0.1%	83	83	0.1%	0	0.0%
자 체 수 입	3,935	2.7%	3,954	3,954	2.7%	19	0.5%
차 입	1,233	0.9%	1,233	1,233	0.9%	0	0.0%
지 방 교 육 채	1,233	0.9%	1,233	1,233	0.9%	0	0.0%
기 타	3,824	2.7%	3,824	3,824	2.7%	0	0.0%
전 년 도 이 월 금	3,824	2.7%	3,824	3,824	2.7%	0	0.0%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18억원, 특별교부금 172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41억원(교육급여국고전입금)이 감액되어 총 349억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교육급여국고전입금 감액에 따른 지자체부담 교육급여보조금 11억원이 감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2억원(시설물 사용료) 감액, 금융자산회수 2억원(교원노조사무실임차계약 변경에 따른 보증금) 증액, 기타수입 19억원 증액으로 총 19억원이 증액되었음.

3. 세출예산안

-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정책사업에 288억원, 평생·직업교육 2억원, 교육일반 67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357억원이 증액된 14조 3,931억원임.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액 대비 0.2%, 288억원이 증액된 13조 3,044억원임.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액 대비 1.7%, 2억원이 증액된 139억원임.
- 교육일반 부문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67억원이 증액된 1조 748억원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17년 기정예산액		'17년 제3회 추경안			증감	
	(A)	구성비	당초	수정(B)	구성비	(C-B-A)	증감율
합 계	143,574	100%	143,886	143,931	100%	357	0.2%
유 아 및 초 중 등 교 육	132,756	92.5%	133,002	133,044	92.5%	288	0.2%
인 적 자 원 운 용	75,083	52.3%	75,082	75,082	52.3%	△2	0.0%
교 수 - 학 습 활 동 지 원	5,611	3.9%	5,693	5,735	3.9%	124	2.2%
교 육 복 지 지 원	13,278	9.2%	13,443	13,443	9.2%	165	1.2%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6,874	4.8%	6,874	6,874	4.8%	-	-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19,037	13.3%	19,037	19,037	13.3%	-	-
학 교 교 육 여 건 개 선 시 설	12,873	9.0%	12,873	12,873	9.0%	-	-
평 생 · 직 업 교 육	137	0.1%	137	139	0.1%	2	1.7%
평 생 교 육	110	0.1%	110	112	0.1%	2	2.2%
직 업 교 육	27	0.0%	27	27	0.0%	-	-
교 육 일 반	10,681	7.4%	10,748	10,748	7.5%	67	0.6%
교 육 행 정 일 반	847	0.6%	912	911	0.6%	65	7.7%
기 관 운 영 관 리	723	0.5%	725	725	0.5%	2	0.3%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료	8,992	6.3%	8,992	8,992	6.3%	-	-
예 비 비 및 기 타	120	0.1%	120	120	0.1%	-	-

4. 명시이월 사업조서

- 2017년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은 실내체육관 증축사업비 등 총 106건에 3,343억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음.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106건	1,497,214	334,313	22.3%
본 청	실내체육관 증축 사업비 등 28건	822,785	154,143	18.7%
직 속 기 관	직속기관 시설 관리비 등 6건	27,420	10,316	37.6%
교육지원청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 72건	647,008	169,854	11.0%

※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7~216쪽 참고

I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특별교부금은 제3회추경예산 반영분외에 2017년 2차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11.6일 통지) 280억원과 2017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11.20일 통지 등) 25억원 등 305억원을 예산에 미반영하였음.

◆ 미반영 특별교부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액	금회교부	18년예정교부액	내 용
합 계		77,399	30,489	28,633	
17년 2차 지역현안수요특별교부금(11.6일)	소 계	77,399	27,969	28,633	105교
	체육관 증축 및 건립	48,151	17,125	24,946	덕은초 등 27교
	간이 체육실 조성	1,290	1,290	-	냉천초 등 43교
	창호 교체	3,655	3,655	-	도수초 등 7교
	외벽 보수	4,101	2,949	-	성저초 등 5교
	화장실 보수	2,386	2,108	-	백석고 등 3교
	급식소 현대화	3,679	3,130	-	곤지암고 등 3교
	LED조명 개선	1,327	1,327	-	원중초 등 3교
	냉난방시설 개선	800	800	-	수청초 등 2교
	기타 환경 개선 등	12,010	7,737	3,687	평택고 등 12교
	16~17년 교부금 정산	-	△12,152	-	
17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소 계	0	2,520	0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	-	1,500	-	2017.11.20. 교부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	300	-	2017.11.20. 교부
	특성화고 취업역량 제고	-	720	-	2017.11.23. 교부

- 미반영 특별교부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10.27일) 이후 교육부로 부터 교부통지 받은 체육관 증축 외 12개 시설사업비임.

-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체공유재산심위원회 거쳐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체육관 증축 사업은 소요액 일부가 18년에 교부예정이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지방재정법 제34조1)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금년도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운용으로 판단됨.

2. 세출예산안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목적지정 특별교부금 172억원,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지원금 △52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지원금 218억원 전액을 세출로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14조 3,574억원 대비 357억원 증가한 14조 3,931억원임.
- 특별교부금은 수능연기에 따른 추가경비 21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진로체험 지원 18억원,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 개발 51억원, 디지털교과서활성화 무선인프라 구축 79억원 등 26개 사업에 총 172억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학생수 감소로 총 53억원을 감액하였음.
-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6개사업 45억원은 출납폐쇄 기한이 12월 31일이고, 익년도 1월 20일까지 지출이 가능하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특별교부금 사업(수정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합 계			4,478	
1	학교정책과	방송통신중 운영체제 개편	301	수정안
2	교육과정정책과	초중등 온라인 수업 내실화	20	수정안
3	교육과정정책과	수능연기에 따른 추가경비 지원	2,081	수정안
4	체육건강교육과	평창동계올림픽 진로체험학습 지원	1,825	수정안
5	문예교육과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	12	수정안
6	평생교육과	문해교육 프로그램 기반 구축	239	수정안

1)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3. 명시이월 사업

- 2017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²⁾ 사업은 2016년 대비 22.9% 623억원 증가한 3,343억원임.
- 기관별로는 교육지원청이 명시이월액의 50.8%인 1,699억원으로 가장 높고 본청 46.1% 1,541억원이며, 전년대비 본청의 명시이월 비율이 증가하였음.

◆ 기관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명시이월액		'16년 명시이월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334,313	100%	272,039	100%	62,274	22.9%
본 청	154,143	46.1%	54,412	20.0%	99,731	183.3%
직 속 기 관	10,316	3.1%	1,806	0.7%	8,510	471.2%
교 육 지 원 청	169,854	50.8%	215,821	79.3%	△45,967	△21.3%

- 명시이월율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 명시이월액은 최종예산액에 따른 명시이월 비중이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음.

◆ 연도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명시이월액(A)	334,313	272,039	344,884	350,341	155,609
최종예산액(B)	14,357,454	13,511,674	12,981,336	12,502,205	11,466,133
비율(A/B)	2.3%	2.0%	2.7%	2.8%	1.4%

-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은 16개 사업에 1,109억원으로 전체 이월액 3,343억원의 33.2%임.
 - 본예산 편성 2개 사업 216억원,

2)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회 추경 편성 10개 사업 67억원,
- 제2회 추경 편성 4개 사업 825억원이 이월됨.

◆ 예산 편성액 전액 명시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기관명 (부서명)	사업명	이월액	예산편성 시기	이월사유
합 계	16개	110,857		
소계	본예산 편성(2개)	21,617		
안산교육회복지원단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	417	본예산	부지제공 절차 지연(주민협의지연)
재난예방과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립	3,229	본예산	교육부 '안전체험 교육시설 표준 모 형안' 최종안에 따른 건축설계 지연
		17,971	1회추경	
소계	1회 추경 편성(10개)	6,733		
시설과	신설학교시설비	70	1회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에 따른 사업 절차 지연
수원교육지원청	영신중체육관 증축	884	1회추경	용도변경 허가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 른 설계 지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성문중 교사동 리모델링	389	1회추경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근명중 연결보도교 설치	208	1회추경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광명교육지원청	가칭)역세중학교 설계비	628	1회추경	내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연
평택교육지원청	신설유치원시설비	560	1회추경	다년도에 걸친 시설공사로 인한 이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사 창호 개선	200	1회추경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증축예정으로 창호 개선 공사 지연
의정부교육지원청	청사부지 확충 및 주차장 조성	162	1회추경	부지매입 협의 지연
고양교육지원청	원당중 환경개선사업	980	1회추경	사업시행 시기 미도래 및 공기부족
연천교육지원청	공동사택관리	2,652	1회추경	다년도에 걸친 시설공사로 인한 이월
소계	2회 추경 편성(4개)	82,507		
시설과	누수시설 개선	3,809	2회추경	2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시설과	체육관 증축	76,539	2회추경	체육관 대상학교 미선정
의정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94	2회추경	특수센터가 학교내 위치로 인해 겨울 방학중 공사 예정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시설비	2,065	2회추경	2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